

자료 리스트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다케시마 영유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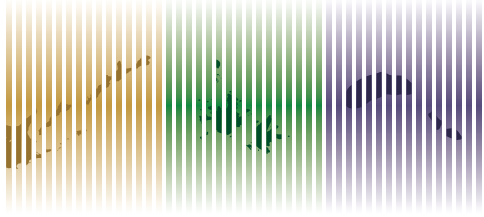
번호	내용	작성년월일	소장기관
자료 1	다케시마 도해 면허 달서(사본)	1618년(겐나 4년)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자료 2	다케시마 도해선 문장(아옥문)의 선인(船印)	17세기(추정)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자료 3	1681년 5월에 오야 집안에 묻은 막부 순견 관리의 질문에 대한 규에몬가쓰노부의 회답 (延宝九年西ノ歳二御巡見様御宿申上候覚)	1681년(엔포 9년)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자료 4	가메야마쇼자에몬이 오야큐에몬가쓰자네에게 보낸 서한	1660년(만지 3년) 9월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자료 5	울릉도 도해 금지 봉서(奉書)(사본)	1696년(겐로쿠 9년)	돗토리현립 박물관
자료 6	다케시마 대여 청원 부도(附図)(사본)	1904년(메이지 37년)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7	각의 결정서 ‘隠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ニ在ル無人島ヲ竹島ト名ケ島根県所属隠岐島司ノ所管ト為ス’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	국립 공문서관
자료 8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	1905년(메이지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9	경위도 실측 원부	1908년(메이지 41년) 8월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자료 10	다케시마 관유지 대장	1905년(메이지 38년) 5월 17일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11	1909년 칙령 54호	1909년(메이지 42년) 3월 29일	국립 공문서관
자료 12	시마네현령 제8호	1906년(메이지 39년) 3월 1일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13	관유물 대여료	1925년(다이쇼 14년)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14	관보(제6586호)	1905년(메이지 38년) 6월 6일	국립 국회 도서관
자료 15	1905년 시마네현령 제18호	1905년(메이지 38년) 4월 14일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16	시마네현 농 제1926호	1905년(메이지 38년) 6월 5일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17	1921년 시마네현령 제21호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일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18	광업사항(상공성) 시굴권 허가	1939년(쇼와 14년) 9월 19일	시마네 현립 도서관
4 페이지	고다니이헤에가 보내온 다케시마 지도	1969년(겐로쿠 9년)경(추정)	돗토리현립 박물관
5 페이지	‘일본지도’(시볼트)	1840년(덴포 11년)	국립 역사 민속박물관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

번호	내용	작성년월일	소장기관
자료 1	미영 공동 초안	1951년(쇼와 26년) 5월 3일	영국 국립 공문서관 (공의재단)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
자료 2	미영 협의 의사록	1951년(쇼와 26년) 5월 2일	영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 3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1951년(쇼와 26년) 7월 19일	미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 4	미국의 회답(이른바 러스크 서한)	1951년(쇼와 26년) 8월 10일	미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 5	미국의 항의	1952년(쇼와 27년) 2월 11일	한국 외교 사료관
자료 6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합동조사 사진	1953년(쇼와 28년) 6월 27일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자료 7	벤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	1954년(쇼와 29년) 9월 30일	미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 8	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보낸 전보	1953년(쇼와 28년) 7월 15일	영국 국립 공문서관

영토 · 주권 전시관

NATIONAL MUSEUM OF
TERRITORY AND SOVEREIGNTY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본의 영토와 사람들의 마음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3-8-1

<https://www.cas.go.jp/jp/ryodo/index.html>

다케시마

내각관방영토 · 주권대책기획조정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1953년 여름 이후

한국의 실력행사에 의한 불법
점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 한국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다케시마를 포함한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항의에도 철회하지 않은 채 1953년부터 1954년에 걸쳐 일본의 순시선에 충격을 가하는 등 실력행사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그 후 일본과 한국은 정식적인 외교문서를 통하여 자국의 영토라는 이유를 서로 주장했지만 결론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며 1954년, 1962년,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불법 점거한 다케시마에 착수시설 및 헬리포트 등을 건설하고 정부 고관의 상륙 및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다케시마는 한국영토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오키 제도의 북서 약 158km,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의 일본해상에 위치한 섬. 메지마(히가시지마), 오지마(니시지마)의 2개 섬과 그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다. 총면적은 약 0.20㎢.

목차

CONTENTS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다케시마의 영유 경위 에도 시대의 이용과 시마네현으로의 편입

1 울릉도 및 다케시마 도항 허가와 그 후의 울릉도 도항 금지	3~4 페이지	2 메이지시대의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5~6 페이지
1618년 에도막부가 요나고(돗토리현)의 주민에게 울릉도 도항을 허가. 그 후 다케시마 도항도 허가		■ 개국~메이지정부에 의한 근대국가 건설 ■ 울릉도와 다케시마의 명칭 및 장소의 일시적 혼란	
1693~96년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울릉도 도항 금지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음 ■ 안용복은 어떤 인물인가?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	

3 다케시마에 대한 계속적인 행정권 행사 7~8 페이지

관할	1905년 5월 관유지 대장에 등록 1909년 3월 29일 관할 구역을 칙령으로 지정
등기	1905년 6월 6일 상업 등기
과세 등	1906년 3월 1일 강치 포획에 과세 1906년~ 관유지 사용료 징수

산업 단속 · 인허가	1905년 4월 14일 강치 포획을 지사의 허가 사업으로 지정 1905년 6월 5일 강치 포획 허가 감찰을 교부 1921년 4월 1일 다케시마 김과 미역 채취 허가 1936년 6월 6일 인광 시굴권을 허가
-------------	---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9~10 페이지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 발효와 한국이 취한 행동	11~12 페이지
1945년 8월 포츠담 선언 수락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1951년 5월 미영 공동 초안		1952년 1월~ 한국 대통령 ‘해양 주권 선언’발표 이승만 라인 설정 일본과 미국의 항의	
1951년 7월~8월 한국이 미국에 초안 수정을 요청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거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점령 종료	
		1953년 7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हे쿠라 총격 사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	

3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의 노력 13~14 페이지

1954년, 1962년, 2012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제안, 한국 거부
■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본의 대응	
■ 국제재판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한 사례	
■ 증거자료를 볼 때의 포인트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다케시마 영유 경위

에도시대의 이용과 시마네현으로의 편입

1 울릉도 및 다케시마 도항 허가와 그 후의 울릉도 도항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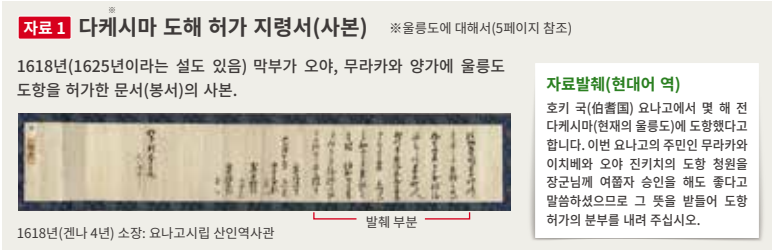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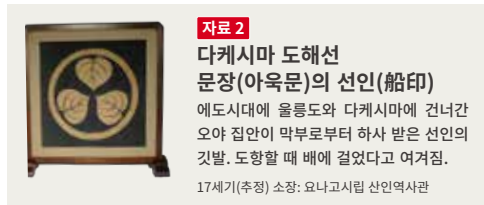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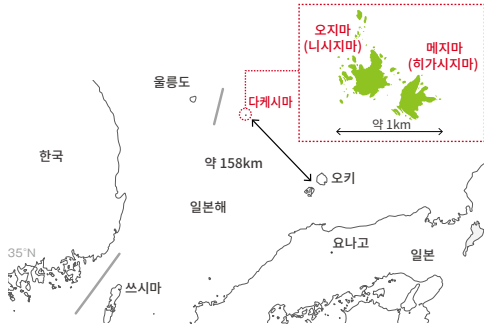
일본은 에도시대인 17세기 초에 처음 국가로서 다케시마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에도막부는 쇄국정책을 채택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허가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1618년

에도막부는 요나고(돗토리현)의 주민에게 울릉도 도항을 허가. 그 후 다케시마 도항도 허가.

회조선업에 종사하는 요나고의 주민이었던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재목과 해산물이 풍부한 무인도였던 울릉도로의 도항을 에도막부에 청원했습니다. 막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매년 1년 교대로 울릉도에 건너가 사업을 벌였습니다.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감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 자료 1~4**



오야 집안이 다케시마에 건너갔음을 나타내는 자료

자료3 자료4

자료 3 1681년 5월에 오야 집안에 묵은 막부 순견 관리의 질문에 대한 규에몬 가쓰노부의 회답 (延宝九年酉ノ歲二御巡見様御宿申上候覺)

1681년(엔포 9년) 5월에 오야 집안에 묵은 막부 순견 관리의 질문에 대한 규에몬 가쓰노부(九右衛門勝信)의 회답. 현재의 다케시마를 소군 이에쓰나의 대, 24,5년 전에 하사하여 감치 포획을 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발췌(현대어 역) 규유인님(도쿠가와가문의 4대손인 장군 이에쓰나를 일컬음)치세, 다케시마 (현재의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주위 20경 정도의 작은 섬이 있는데 초목이 없는 바위산으로 24,5년전에 아베시로그로남의 중개로 하사하여 도항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감치의 기쁨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오야큐에몬가쓰노부 1681년(엔포 9년)
사진은 오야신쿠로카쓰키 필사 1810년 (분카 11년)

1603년 게이초(慶長) 8년 에도막부 출범
1618년(1625년) 겐나(元和) 4년(간에이(寛永) 2년) 막부가 울릉도 항해를 요나고의 주민에게 허가
1633년 간에이(寛永) 10년 쇄국령
막부가 다케시마 도항을 허가

한국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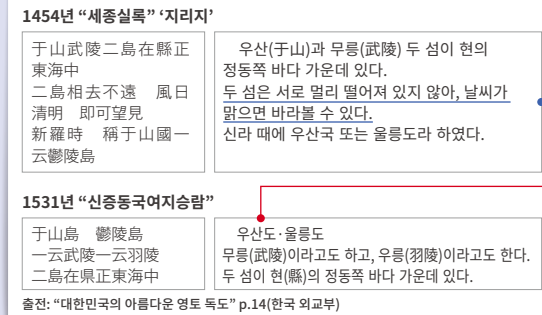
한국정부의 주장(1)
조선 고문헌

해설

한국은 이러한 조선의 문헌이 다케시마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청에서 편찬한 문헌에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다.

한국의 관청에서 편찬한 많은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독도의 기록을 통해 한국이 오래 전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관청에서 편찬한 문헌에 남아있는 독도의 대표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인용한 문헌에는 다케시마에 관한 기술이 없으므로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주장에는 증거자료와 결론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증거자료의 해석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 ① 다케시마(한국명:독도)가 이런 문헌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 ②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이 문서의 ‘팔도총도’에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져 있으므로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세종실록”의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술은 훗날 더욱 자세한 해설을 첨부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에는 수목이 없으므로 울릉도에서 다케시마가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693~96년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 **→ 자료 5**

울릉도(당시의 명칭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 있었지만 결렬되어 1696년 1월에 조선과의 관계를 배려하여 막부는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

조선왕조는 15세기 이후 조선인의 울릉도 도항 및 주거를 금지하여 이 섬은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1692년(겐로쿠 5년)에 무라카와 집안은 울릉도에서 많은 조선인과 조우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1693년에 울릉도에 건너간 오야 집안도 조선인과 조우하여 전복잡이를 할 수 없었던 증거로 삼아 그곳에 있던 조선인 2명을 일본에 데려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안용복입니다.

그 후 에도시대에 조선외교 및 무역의 창구였던 쓰시마번은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안용복 등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조선에 울릉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1696년 1월에 막부는 조선과의 분쟁을 피하고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 반면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로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1693년 : 오야 집안은 울릉도에서 조우한 조선인 안용복 등 2명을 연행하여 귀국
1693년~ : 일본(쓰시마번)과 조선의 교섭
1696년 : 교섭 결렬
1696년 1월 : 에도막부는 조선과의 분쟁을 피해 울릉도 도항을 금지
※ 단,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음

안용복은 어떤 인물? 지금은 한국의 국민적 영웅
사실은...? 당시의 조선정부는 ‘무지망작의 죄’로 처벌

한국에서 안용복은 17세기말에 두 번 일본으로 건너가 다케시마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게 한 국민적 영웅으로 불리며 울릉도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온 기록은 확실히 남아있으므로 이는 사실이지만, 안용복은 조선왕조가 공도정책을 실시하던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조선왕조의 기록인 “속증실록”에 의하면 1697년에 안용복은 조선에 귀국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조선 관리는 안용복을 ‘우매한 어민’, ‘바람에 떠도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며 왕조가 그런 사람을 일본에 보낼 일이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이 쓰시마 번주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서 안용복의 행동은 ‘무지망작의 죄’에 해당하여 유형에 처했다고 전달되었습니다.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려진 지도



에도막부가 1696년에 울릉도에 도항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막부는 돗토리번에 울릉도 도항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때 돗토리번은 막부에 회답하기위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원쪽 지도). 이 지도에는 울릉도(당시의 호칭은 다케시마)와 다케시마 (당시의 호칭은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동서 두개의 섬으로 그려져 동쪽 섬의 해변가에 ‘선착장’이라는 문구와 오두막집의 그림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울릉도에 건너간 무라카와 집안이 작성한 그림 등을 바탕으로 그려졌다고 여겨지며, 이런 지도나 문헌을 통해 일본이 울릉도와 다케시마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5 울릉도 도해 금지 봉서(奉書)(사본)



소장: 돗토리현립 박물관

막부가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울릉도 도항을 금지시킨 봉서 (奉書)의 사본.

자료발췌(현대어 역)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이나바, 호키를 다스리던 때에 청원이 있었던 요나고의 주민인 무라카와 이치베와 오야 진키치의 다케시마 도항에 대해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해왔지만, 앞으로 금지를 반복하는 취지의 상의가 있으므로 이해하길 바란다.

한국의 주장

한국정부의 주장(2)
안용복의 도일

해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다케시마가 조선영토라고 항의했다. 일본과 조선의 교섭으로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가 되어 일본은 다케시마에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한국은 17세기에 안용복이라는 조선인이 일본에 건너가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라고 항의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은 교섭을 시작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조선 속증 종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 간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울릉도쟁계’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과 관련하여 ‘속증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7, 20 (한국 외교부)

교섭은 합의를 보지못한 채 결렬. 에도막부의 도항 금지는 조선과의 우호관계 배려. 도항 금지는 울릉도.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음.

한국은 일본과 조선의 교섭 후,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1696년 1월에 막부가 도항 금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막부의 문서에는 울릉도를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해치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으며 견해 차이가 있어도 조선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배려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이며,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상기 참조).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음.

한국은 안용복이 1696년 5월에 두번째로 일본에 건너가 다케시마는 조선영토라고 항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의 행동과 발언은 사인(私人)이 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의 조선은 왕조와는 관계가 없다며 추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

안용복이 조선 귀국 후에 왕조의 관리에게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서 신빙성이 결여됩니다.

2 메이지시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개국~메이지 정부에 의한 근대국가 건설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이 아시아에 진출하여 국제관계가 복잡해지는 속에서 메이지 정부에 있어 국가의 근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제도를 확립하고 주변 낙도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1880년에 군함 아마기를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다케시마 주변의 민간인 활동이 서서히 활발해져 울릉도 도항 금지를 내리는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다케시마의 명칭 및 장소의 일시적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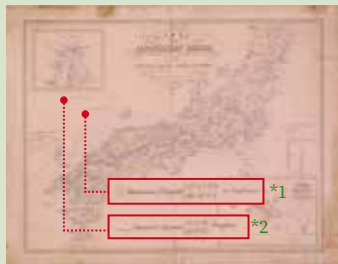
■ 지금의 다케시마는 예전에는 마쓰시마라고 불렀다 → 그림①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지리적 인식 혼란-가공의 섬 출현 → 그림②③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를 '다즐레(Dagelet) 섬',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이 울릉도를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 불렀으나, 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그 후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문헌을 통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알고 있었던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할 때 울릉도와 한반도 사이에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섬을 '다카시마' 현재의 울릉도에 위치하는 섬을 '마쓰시마'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라고 불리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도 불리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1880년에 현지조사로 확인

그 후 '마쓰시마'의 개척을 정부에 청원하는 사람이 생겼으며 정부는 섬 이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880년에 현지 조사를 하여 '마쓰시마'라고 불리는 섬이 울릉도인 것을 확인했지만,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 불리게 됐기 때문에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905년에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교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1900년경부터 민간의 다케시마 이용이 활발해졌으므로 1905년에 일본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

민간인으로부터 대여 청원을 받은 일본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

1900년경 다케시마 주변에서 강치 포획이 활발해지고, 그때부터 과당경쟁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오키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년 9월에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리안코 섬'의 대여를 청원하였습니다.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년 1월 28일에 섬의 이름을 '다케시마'라고 정하고, 시마네현 소속이며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 자료 6~7



1849년
가에이(嘉永) 2년
프랑스의 리앙쿠르 호
(포경선)가 다케시마 발견

1868년
케이오(慶応) 3년
왕정복고 대호령
(에도막부가 끝남)

1868년
메이지(明治) 원년
메이지 정부 수립

1871년
메이지 4년
번(藩)을
폐지하고
현(縣)을 설치

1877년
메이지 10년
서남(西南)전쟁

1904년 9월 29일
메이지 37년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 대여 청원을
정부에 제출

1905년 1월 28일
메이지 38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을 각의 결정

1905년 2월 22일
메이지 38년
시마네현이
편입을 고시

이후, 어업 규칙 개정과 관유지 대장 등록,
강치 포획 허가 등 계속적으로 행정권을 행사

한국의 주장

한국정부의 주장(3) 1900년 칙령 제41호

다케시마를 ‘석도(石島)’로서 한국 영토에 편입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습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24(한국 외교부)

해설

한국은 1900년에 다케시마를 한국 행정구역 (울도군)의 관할로 규정한 칙령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도가 다케시마라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칙령에 ‘석도(=독도)’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도가 다케시마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칙령 제정에 즈음하여 제출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칭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에서는 ‘해당 지방은 세로 80리(약 34Km)이며 가로 약 50리(약 21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다케시마는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지배의 증거는 될 수 없다.

만일 칙령 41호의 ‘석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가리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케시마(1906년 시마네현 조사 시에 오노마스케 촬영)
소장: 시마네 현립 도서관

3 지속적인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행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편입을 고시.
관유지 대장에 등록하여 다케시마를 자세히 조사

각의 결정에 의해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 편입을 관내 전역에 고시하고 관유지 대장에 등록함과 동시에(5월 17일), 강치 포획을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해에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를 시찰하고 다음해인 1906년에는 시마네현 조사단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지질도 등을 작성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군 수로부가 다케시마를 측량하는 등 다케시마 관리의 기초가 굳어졌습니다.

→ 자료 8-10

자료 8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

섬의 위치를 위도 경도로 표시하고, 그 섬의 이름은 다케시마가 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 소관으로 정했음을 시마네현 하에 고시한 서류.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1905년(메이지 38년) 2월 22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발췌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
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度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자료 9 경위도 실측 원부

1908년 8월 4일부터 5일에 걸쳐 해군 수로부가 다케시마의 위도와 경도를 실측한 결과를 기록한 자료.



해군 수로부
1908년(메이지 41년) 8월
소장: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자료 발췌

位置 朝鮮東岸竹島(隱岐國)女島南角上
測量年月 明治41年8月4日至5日

관할

1905년 5월 관유지 대장 등록

시마네현의 지사로 오키 도청이 다케시마의 면적을 조사하여 약도를 첨부해서 보고했다. 시마네현은 그 내용을 관유지 대장에 기재. 면적은 이십 삼 정 삼 단 삼 묘보(貳拾參町參段參畝步)라고 기재했다.

자료 10 다케시마 관유지 대장



시마네현 지리지
1905년(메이지 38년) 5월 17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등기

1905년 6월 6일 상업 등기

1905년에 설립된 나카이 요자부로를 대표 사원으로 한 다케시마 어업 합자 회사의 등기 공고(관보).

자료 14 관보(제6586호) 1905년 6월 15일



자료 발췌
○商業登記
一商号 竹島漁業合資会社
本店島根県周吉郡西郷町...
目的竹島海鹽採掘製造販賣
代表社員ノ氏名中井養三郎...
設立ノ年月日
明治三十八年六月三日
右明治三十八年六月六日登記

사이고구(西郷区) 재판소
1905년(메이지 38년) 6월 6일
소장: 국립 국회 도서관(디지털 컬렉션)

상업 단속 및 인허가

1905년 4월 14일 강치 포획을 지사 허가어업으로 지정

시마네현은 강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강치 어업을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정했다.

자료 15 1905년 시마네현령 제18호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
1905년(메이지 38년) 4월 14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09년 3월 29일 관할 구역을 칙령으로 지정

1909년(메이지 42년)에 오키섬에 도청을 둔 섬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케시마를 오키섬과 함께 오키 도청 관할 구역으로 지정하는 칙령이다. 정식적인 칙령에 의해 오키섬이 도청을 둔 섬으로 지정되어 그 관할 구역 안에 다케시마가 명기되었다.

자료 11 1909년 칙령 54호

자료 발췌

朕島庁ヲ置ク島地指定ノ件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
(御名御璽)
明治四十二年三月二十九日
(略)
勅令第五十四号
島庁ヲ置ク島地左ノ通指定ス
府県名 島庁名 管轄区域
(略)
島根県 隠岐島庁 隠岐島、竹島
(略)

내각 1909년(메이지 42년) 3월 29일
소장: 국립 공문서관



과세 등

1906년 3월 1일 강치 포획 과세

‘1901년 시마네현령 제11호’를 일부 개정하여 새로이 강치 포획 세고를 확정하여 세목(税目)에 추가했다.

자료 12 시마네현령 제8호

자료 발췌

漁業採藻
外海ノ部
鯨 漁
海鹽漁
年税金上リ高千分ノ十五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
1906년(메이지 39년) 3월 1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05년 6월 5일 강치 포획 허가 감찰 교부

시마네현은 허가 청원을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르에게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포획을 허가했다. 감찰을 1장 교부했다.

자료 16 시마네현 농 제1926호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
1905년(메이지 38년) 6월 5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21년 4월 1일 다케시마에서 김과 미역의 채취를 허가

시마네현은 당시의 시마네현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하여 강치 포획 업자에 한하여 다케시마 일정 구역에서 해초와 조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자료 17 1921년 시마네현령 제21호

자료 발췌

第十五條
五 但書「但シ許可ヲ受ケタル海鹽漁業及該漁業者力石花菜、海苔、和布、蜆螺、鮑、胎介等ヲ採取スルハ此限ニ在ラス」ニ改ム

시마네현 지사 다카라베사네히데(財部實秀)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36년 6월 6일 인광 시굴권을 허가

1935년 5월 오사카 광산 감독국에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이 제출되어 1939년 6월 6일 다케시마 인광 시굴이 허가되었다. 상공성이 같은 해 9월 19일에 관보(제3813호)에서 공표했다.

자료 18 광업사항(상공성) 시굴권 허가



자료 발췌
鉱業事項 鉱業法ニ依リ処分シタルモノ左ノ如シ
(商工省)
試掘願許可 登録番号: 島根二、一四三
鉱区所在地: 隠岐国竹島及同地先海面
鉱種: 燐
面積: 八三、八〇〇坪
鉱業権者住所氏名: 鳥取県(略)
許可及登録ノ月日: 十四年 六月六日

상공성 1939년(쇼와 14년) 9월 19일 소장: 시마네 현립 도서관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연합국과 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은 점령하에 놓였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1947년경부터 미국은 평화조약의 시안 작성을 시작하여 예비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초안을 정리하여 독자적인 초안을 작성한 영국과 협의를 실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 점령 개시

조약 협의

1945년 8월

포츠담 선언 수락

포츠담 선언(발췌)

제8항 카이로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와 홋카이도, 규슈와 시코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속 도서로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권고하기 위한 선언이다. 일본의 무장해제, 비군사화, 민주화, 국제사회로의 복귀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26일에 일본에 권고되어 일본 정부는 다음달인 8월에 수락하고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1951년

미국 초안

미국이 조약 초안을 관계국에 제시하여 본격적인 조약 교섭이 시작됐다. 미국 초안은 영토에 관해 일본은 조선을 포기한다고 간결히 규정했다.

미국 초안(발췌)

조선, 타이완과 평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국

미국은 이 단계에서 다케시마가 오래 전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관계국에 알린다.

영국

영국은 일본과 한국의 영토의 경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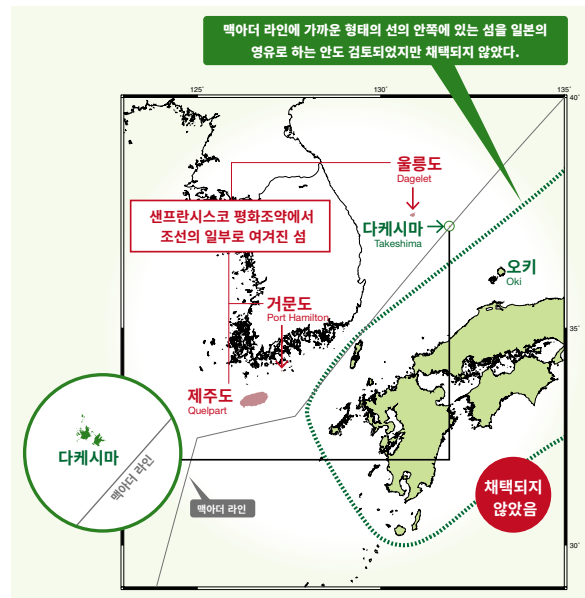
1951년 4월 25일

미영 협의

일본과의 강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짚어진 영국과 미국은 공동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협의를 실시했다. 이 협의에서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하지 않는 초안도 검토되었다(채택되지 않았음).

미영 협의에서 검토된 안(발췌)

제1조 일본의 주권은, ...한국과 쓰시마의 사이를 북동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 방향에 오키 열도의 남동쪽에 다케시마를 북서쪽에서 바라보며 혼슈연안을 따라 나아가...선에 둘러싸인 영토내에 존재하는 모든 섬, 인접한 작은 섬 및 바위에 대해 지속된다. ...



1945년 8월

쇼와(昭和) 20년

포츠담 선언 수락: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951년 3월

쇼와 26년

조약 예비적으로 협의

1951년 4월 25일-5월 4일

쇼와 26년

미영 협의

일본에서의 움직임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SCAPIN) 제677호

1946년 1월

행정권의 일시 정지 (1952년 4월 실효)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의 행정 범위를 지정된 주변 섬들로 한정하고, 그 범위에서 다케시마를 제외.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6항)

점령 중의 행정권 정지와 맥아더 라인온 일본의 영토 결정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SCAPIN) 제1033호

1946년 6월

다케시마 접근 금지 (1952년 4월 해제)

더욱이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에 관한 문서를 발표하여 다케시마 접근 및 접촉을 명시적으로 금지.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규정(제5항)

미영 협의 합의

1951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워싱턴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진 미영 협의의 중에서 제7회 협의에서 미영 쌍방의 대표단은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는 영토만을 특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합의하여 미국 초안의 조선 포기 규정에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 세개의 섬'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자료 2 미영 협의의 의사록



자료발췌(역)

미영 쌍방의 대표단은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는 영토만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합의했다. 이 관계로 미국의 제3조는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 세개의 섬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1951년(쇼와 26년) 5월 2일 소장: 영국 국립 공문서관

미영 공동 초안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감안한 초안이 작성됐다.

연합국의 움직임

1951년 5월 3일

미영 공동 초안

협의 끝에 미국이 제시한 일본이 포기할 영토만을 나타내는 초안에 조선의 일부로서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 세 섬'을 가필하는데에 합의했다. 1951년 5월 3일 미영 공동 초안을 작성하고 6월 개정했다.

1951년 5월 3일 미영 공동 초안(발췌)

제2장(영역)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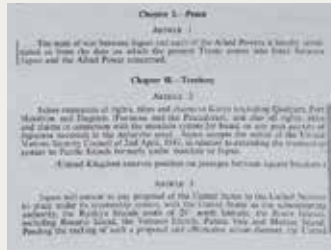
일본은 조선(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를 포함), 타이완과 평후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영국과 미국

미국의 안에 세 섬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선 포기에 관한 조문이 정리될.

자료 1

미영 공동 초안



자료 발췌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Japan renounces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 (including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Formosa and the Pescadores...

1951년(쇼와 26년) 5월 3일 소장: 영국 국립 공문서관 국제 문제 연구소

한국이 수정을 요청

미국은 다케시마는 한국이 영유한 적이 없으며 일본의 영토라고 회답했다.

한국의 움직임

1951년 7월 19일

개정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수정을 요청

① 다케시마를 한국영토로 할 것

한국은 일본이 조선의 일부로서 포기하는 섬들에 다케시마(문서 표기 Dokdo)와 파랑도를 추가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② 맥아더 라인의 유지

한국은 맥아더 라인(점령하의 일본인이 어업 등 조업이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는 경계)을 조약 발효 후에도 유지하길 요청했다.

미국의 움직임

1951년 8월 10일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거부 (이른바 러스크 서한)

①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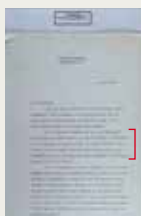
다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고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② 공해어업에 관한 규정은 넣을 수 없다

'공해상의 어업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약에 넣으려면 조약 체결이 연장되므로 불가', '맥아더 라인은 조약 발효까지 유효하다. 그 사이에 일본과 어업 협정 교섭을 할 기회가 있음'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자료 3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한국의 요청(1951년 7월 19일에 한국 대사가 애치슨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1951년(쇼와 26년) 7월 19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 발췌

제2조(a)의 수정 confirms that it renounced on August 9, 1945, all right, title and claims to Korea and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Korea prior to its annexation by Japan, including the islands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arando

제9조 '어업협정'의 마지막에 삽입 Pending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existing realities such as the MacArthur Line will remain in effect

1951년 6월

쇼와 26년

개정 미영 공동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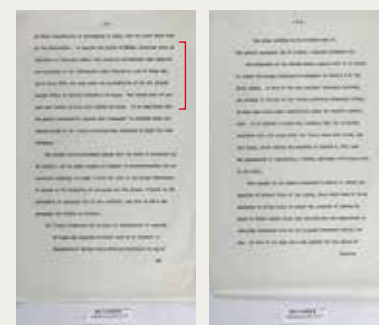
1951년 7-8월

쇼와 26년

한국요청과 미국회답(러스크 서한)

미국의 회답

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한국의 요청(1951년 7월 19일 및 8월 2일 서한)에 관한 미국의 회답(1951년 8월 10일).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국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다.



1951년(쇼와 26년) 8월 10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 4 미국의 회답(이른바 러스크 서한)

자료 발췌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

자료 발췌(역)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 발효와 한국이 취한 행동

평화조약 서명

한국의 조문 수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케시마=일본 영토임을 확인했다.

조약 서명

1951년 9월 8일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이외의 일본의 섬들이 결정됐다.



1951년 9월 8일
쇼와 26년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이승만 라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은 강경수단을 발동했고, 미국과 일본 등은 항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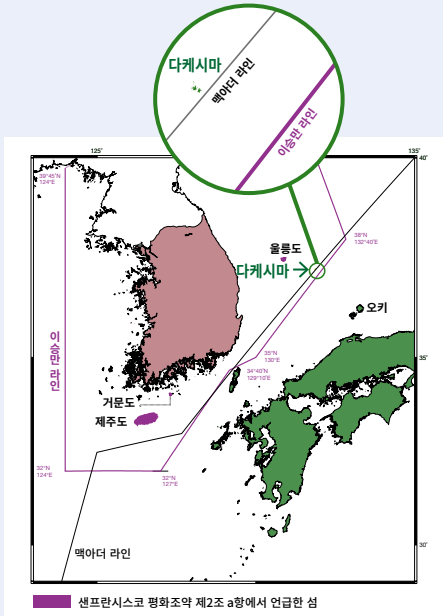
한국의 움직임

1952년 1월 18일

■ 한국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

이승만 한국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공해상의 광범위한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그 후 이 라인을 침범했다며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제주도 남쪽의 어장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여 선원이 억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다.



일본, 미국 외

일본(1952년 1월 28일)이외에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이 선언에 대해 공해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항의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에도 항의했다.

해양주권 선언에 대한 미국의 항의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해양주권 선언이 모든 국가에 인정되는 공해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깊은 염려를 보이며 이런 선언이 인정된다면 모든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해를 영역에 전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자료 5 미국의 항의

자료 발췌

No. 167
American Embassy,
Pusan, February 11, 195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dvise Your Excellency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taken note of the Proclamation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January 18, 1952 regarding Korean sovereignty over the continental shelves and certain water areas adjacent to the mainland and insular coasts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directed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s with deep concern the proclamation of this Proclamation, if carried into execution, this Proclamation would bring with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and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wide ocean areas which have hitherto been regarded as high seas by all nations, and would in these waters and in the air spaces above supplant the free and untrammelled navigation of foreign vessels and aircraft to such controls as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xercise of the sovereignty claimed, might apply. The disclaimer in Paragraph 4 does not lessen the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ince by the assertion of sovereignty, freedom of navigation in these areas might be claimed to be a privilege granted to [sic]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a right deriving from international law.

Although the Proclamation purports to be supported by well-established international precedents, my Government is not aware of any accept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would qualify as a legitimate precedent for this purported extension of Korean sovereignty. In this regard, my Government

wishes to call to the atten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unlike the two Proclamation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eptember 28, 1945 concerning United States policy with respect to the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conservation of contiguous high seas fisheries, the Korean Proclamation relates to Korean national sovereignty over the areas specified therein. The two United States Proclamations did not contemplate, nor in fact effect, any extension of the pre-existing territorial waters of the United States. On the contrary, the one has specific reference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eabed and sea bed rather than to the seabed and sea bed so, while the other relates only to the maintenance of the productivity of the fishery resources in contiguous high seas and provides for joint action where one or more other states also have an interest in a fishery to be conserved.

With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in mi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sires to infor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 reserves all its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its nationals and vessel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Proclamation in question, and under any measures designed to carry them into execution.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most distinguished consideration.

His Excellency
Yung-tai Pyu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Part I: The United Government is very much interested in seeing a just and equitable settlement of the fishing problem and the other outstanding problems between Japan and Korea but believes that this is primarily a matter to be worked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orthcoming negotiations. It is hoped that moderation on both sides and recognition of the community of interest between the two nations will lead to an equitable settlement.

Part II: The following is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other background material.

1. The term "national sovereignty" denotes complete jurisdiction for all purposes.

2. The term "territorial waters"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littoral state has sovereignty over it. This distinguishes territorial waters from the high seas over which no nation has sovereignty.

3. Despite the Republic of Korea disclaimer, the Republic of Korea Proclamation is in effect equivalent to the claim that any nation can, by proclamation, convert the high seas into territorial waters.

(text omitted)

조약발효

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항이 재개되었음에도 한국측이 방해했고,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향해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약 발행 일본의 주권회복

1952년 4월 28일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고 SCAPIN-677 등,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한 조치도 종료됐다. 그 후 다케시마는 군사훈련구역으로 미군에 제공했다.

1952년 다케시마, 미군 폭격훈련 구역 지정
7월 26일 (다케시마 도항 불가)

1953년 폭격훈련 구역 지정 해제
3월 19일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한국은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했다. 미국과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견해이다.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

일본의 움직임

1953년 6월~

■ 다케시마 도항 재개

폭격훈련 구역 지정 해제 이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을 허가하고 다케시마와 그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개시했다. 반면 한국인의 다케시마 불법 상륙이 빈발하여 그 단속을 실시했다.



산인 신보 기사
(1953년 7월 14일)
소장: 시마네 현립 도서관

1953년 7월~

■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해쿠라 충격 사건

1953년 7월 12일에 다케시마 근처에서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사카기 해상보안부의 순시선 '해쿠라'가 수 십 발의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구상서(口上書)왕복.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해쿠라 충격 사건 다음날 일본은 한국에 항의했다. 그 후 자국의 영유 근거에 관한 견해를 첨부한 구상서의 왕복이 시작된다. 일한 일한 양국 모두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주된 구상서(견해)의 왕복

일본	한국
① 1953년 7월	① 1953년 9월
② 1954년 2월	② 1954년 9월
③ 1956년 9월	③ 1959년 1월
④ 1962년 7월	④ 1965년 12월

합동조사 실시

1953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다케시마 주변 밀항 및 밀어의 단속을 실시했다. 다케시마 상륙 직후 한국인 6명을 발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불법입국 및 어업 위반임을 알리고 퇴거하도록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 장소에 동력선이 없었으므로 마중 오는 배가 도착하면 바로 돌아갈 것을 약속 받았다.

자료 6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합동조사 사진

1953년(쇼와 28년) 6월 27일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1954년 6월
쇼와 29년

○ 한국이 해양 경찰대를 다케시마에 파견 불법 점거 체제를 굳힘

미국의 견해: 밴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

평화조약 기간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일본이 포기할 섬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케시마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해야함을 미국은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자료 7 밴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



자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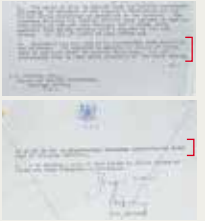
제임스 밴 플리트 대통령 특명 대사는 1954년(쇼와 29년) 4~7월에 걸쳐 아시아 각국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해 10월 4일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각국의 군비상황 등에 관한 보고와 미국이 취할 마땅한 정책에 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1954년(쇼와 29년) 9월 30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

영국의 견해: 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의 전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따라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견해를 본국 외무성에 보고.

자료 8 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보낸 전보



자료 개요

순시선 '해쿠라'가 한국에게 충격 받은 사건의 다음날인 14일에 일본의 각지에서 오카자키 외무장관이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미국 양 정부에게 충고를 의뢰한다는 발언을 하고, 이에 도쿄 주재 영국 대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설명(보고)을 했을 때의 전보.

1953년(쇼와 28년) 7월 15일
소장: 영국 국립 공문서관

3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의 노력

일본의 움직임

1954년 9월~

■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1962년, 2012년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받았다(벤 플리트 보고).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움직임

한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행동

이하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31(한국 외교부)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본의 대응

일본은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각각의 사안의 성질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다음 사안의 성질과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사안의 성질	영토 문제가 존재
지금까지의 경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음. 일한 양국 간에 1950년~60년대에 구상서가 오고 가며 서로 주장을 전달했다. 일본은 두 나라 사이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1954년, 1962년, 2012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	국제법에 따른 해결을 추구. 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해 계속하여 항의.

■ 국제재판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한 예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의 영토에 관한 다툼을 국제재판을 통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재판 년도	사건 명	재판소(위탁 근거)	당사국	판결
1928	팔마스 섬 사건	중재 재판	미국 대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귀속
1931	클리퍼튼 섬 사건	중재 재판	멕시코 대 프랑스	프랑스에 귀속
1933	동부 그린란드 사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선택 조항)	덴마크 대 노르웨이	덴마크에 귀속
1953	망끼에 에크레호 사건	국제사법재판소(특별 합의)	프랑스/영국	영국에 귀속
2002	리기탄 섬 시파단 섬 주권 사건	국제사법재판소(특별 합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 귀속
2008	페드라 블랑카 사건	국제사법재판소(특별 합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싱가포르에 귀속 단, 미들 락스는 말레이시아에 귀속

■ 증거자료를 볼 때의 포인트

국가와 국가간의 영유권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때는 자국의 주장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증거자료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기 위한 몇개의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포인트 1

자료가 나타내는 내용의 유효성

제시된 증거자료가 국제재판 등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각각의 사건마다 특유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에서는 오른쪽에 기입한 것과 같은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유력한 증거라고 인정받는 것

〈예〉
실질적 지배를 나타내는 것. 예를 들면 과세, 토지 등기, 관계 법률 제정, 수협과 어업의 관리 규제, 자연보호구의 설정, 출입국관리규칙, 정부의 허가를 받은 개인의 활동

✕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은 것

● 자국의 오래된 지도에 섬이 게재되어 있다.
● 자국의 영토에서 섬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 섬 건너편의 바다 색이 바뀌는 일이 있다.
● 정부의 주요 인물이 섬 근처를 지나갔다.

포인트 2

자료의 신뢰성

제시된 증거자료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료에 쓰여진 내용이 구승이나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 초기에 걸쳐 작성된 다케시마 주변 지도에는 아르고노트섬이라고 불리는 가공의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문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3

자료 해석의 정확성

제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증거자료의 정확한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료에 쓰여있는 내용과 이끌어 내려는 결론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거나 앞뒤 문맥 및 다른 관련자료 등과 조합하면 적당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옛지도나 고문서의 해석은 판단이 어려운 일이 많아 전문가의 견해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